제263회 임시회
2007. 9. 12(수)

검 토 보 고 서

< 검토안건 >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만흠의원 대표발의)**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고 일 준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건의 일부개정조례조례안(연만흠 의원 대표발의안, 충청북도지사 제출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2007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연만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 등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개정(2001.1.26)에 따라 위원자격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보완(안 제3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2005.5.18 신설)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에 주식의 처분시한 연장 승인을 추가함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심의 및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추가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2006.12.28)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안 제3조제2항)

- 도의원, 3급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자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변경

※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시·군의회 의원 및 시·군의 4급공무원 및 그 퇴직자
  시·군공직자윤리위원회 ⇒ 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변경

○ 「공직자윤리법」 제8조 개정(1994.12.31) 및 제23조 삭제(2001.7.24)에 따른 관련 법 조문 변경

- 법 제8조제6항⇒ 법 제8조제7항
- 법 제8조제11항 ⇒ 법 제8조제12항
- 법 제23조 ⇒ 법 제24조

○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

2 충청북도지사 제출안

가. 제안이유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직윤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정비(안 제2조)

○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조사의뢰, 주식백지신탁된 주식의 기간연장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도, 시·군 위원회간 재산심사권 변경에 따라 우리도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대상을 조정 (안 제3조)

○ 안건심사 및 의결 시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및 조사의뢰, 성실신고 등에 대한 징계벌칙 요구와 관련된 해당 법조항을 정비 (안 제6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조)

○ 도의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조항 신설 (안 제9조)

3. 검토의견

가. 개정사유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기 **2건의 일부개정조례조례안(연만흠 의원 대표발의안, 충청북도지사 제출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을 개정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조례안별 주요 개정내용

2건의 조례안 모두 핵심적인 개정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06.12.28)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 변경 등**이며, 기타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붙임의 개정조례안 비교표와 같음.

다. 종합의견

동일조례의 개정을 목적으로 동시에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조례안 정비**라는 **주요 개정목적이 동일**하며, 개정내용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자격 추가, 관할권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입법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수준높은 조례안 정비를 위하여 상기 2개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연만흠 의원 대표발의안, 충청북도지사 제출안)

※ 개정조례안 비교표

연만흠 의원 대표발의안	충청북도지사 제출안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12항----------	2. ----제8조제12항 ----------
3.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승인
4.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6.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7.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한 안건의 심의	

연만흠 의원 대표발의안	충청북도지사 제출안
② (현행과 같음) 1.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시·군의회 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군의회 의원 및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석위원 ----------. 1. ------제7항----------제12항----------.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4조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석위원 ----------. 1. -----제8조제7항----------제8조제12항----------.-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